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이사회 규정	제개정일	2026.04.28
	규정코드	TCK-A-02	Rev No.	4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

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회는 정관 제 4 장에 의거하여 등기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.

제 5 조(의장)

1. 이사회는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.
2.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을 의장으로 하며, 대표이사 사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제 34 조 2 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종류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2 월, 3 월, 4 월, 7 월, 10 월, 12 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이사회 규정	제개정일	2026.04.28
	규정코드	TCK-A-02	Rev No.	4

1.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소집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.
2.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1.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개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그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관 제 38 조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1. 이사회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단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4.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부의절차)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사무국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대표이사 명의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한다. 단, 긴급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.

제 11 조(부의사항)

1.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1.1.1. 주주총회의 소집
 - 1.1.2. 영업보고서의 승인, 재무제표의 승인, 정관의 변경, 자본의 감소,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1.1.3. 주식의 소각
 - 1.1.4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이사회 규정	제개정일	2026.04.28
	규정코드	TCK-A-02	Rev No.	4

- 1.1.5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1.1.6. 이사, 감사(외부감사인 포함)의 선임 및 해임
- 1.1.7. 주식의 액면미달발행,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1.1.8. 주식배당 결정
- 1.1.9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
- 1.1.10. 이사감사의 보수한도(안)
- 1.1.11.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 포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. 단, "최대주주"와 "특수관계인"의 개념 정의 및 승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"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"에 따른다.
- 1.1.12. 법정준비금의 감액
- 1.1.13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1.2. 경영에 관한 사항
 - 1.2.1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1.2.2.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 - 1.2.3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
 - 1.2.4. 사업목적의 변경
 - 1.2.5. 주요 계약(판매점 계약, 라이선스 계약, 통상의 영업 활동 외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기간이 3 년이상 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지불 의무가 생기는 계약 등)의 체결
 - 1.2.6. 연간 사업계획 및 경영방침
 - 1.2.7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1.2.8. 중장기 사업계획 및 경영방침
 - 1.2.9. 해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 추진
 - 1.2.10. 중요한 급여 체계, 상여금, 후생제도 변경
 - 1.2.11.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1.3.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
 - 1.3.1. 증자 또는 감자
 - 1.3.2. 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, 주식예탁증서(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) 등)의 발행에 관한 결정
 - 1.3.3. 이익소각
 - 1.3.4.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(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)
 - 1.3.5.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장기·단기 차입
 - 1.3.6. 1 건당 10 억원 이상 고정자산의 제거, 평가감 등
 - 1.3.7. 1 건당 1,000 만원을 초과하는 기부, 찬조, 증여
- 1.4.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이사회 규정	제개정일	2026.04.28
	규정코드	TCK-A-02	Rev No.	4

- 1.4.1. 담보제공(입찰, 계약, 하자,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) 또는 채무보증
- 1.4.2. 채무의 면제 또는 인수
- 1.4.3. 고객에 대한 180 일 이상의 신용공여
- 1.4.4.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 공여 중 "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"에 따라 허용되는 일정한 신용 공여. 단, "이해관계자"의 개념 정의는 "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"에 따른다.
- 1.5.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
 - 1.5.1. 50 억원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
 - 1.5.2. 50 억원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, 임대차, 추가취득, 중요한 개선 또는 보수
 - 1.5.3. 타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
 - 1.5.4. 50 억원 이상의 연구개발투자 (투자금액은 총 투자기간 동안의 금액으로 산정하며, 증액으로 인한 금액 초과시 차기 이사회에 부의한다. 단, 대표이사는 투자 중요성을 판단하여 상기 금액 미만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부의할 수 있다.)
- 1.6. 현금배당
- 1.7.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
- 1.8.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(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)
- 1.9. 임원(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)에 관한 사항
 - 1.9.1. 임원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
 - 1.9.2. 임원의 타회사 임원 겸임(사외이사 제외)
 - 1.9.3. 비등기이사의 채용과 승진에 관한 사항
 - 1.9.4. 자문 및 고문의 채용에 관한 사항
- 1.10. 소송, 중재 기타의 분쟁절차의 개시
- 1.11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2.1. 1 건당 5,000 만원 이상의 매출채권 대손, 재고자산 폐기 등 채권, 자산의 훼손
 - 2.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- 2.3. 사업의 양도 및 양수,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결과
 - 2.4.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- 2.5.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개발계획
 - 2.6. 중요설비의 개보수계획 및 신증설 계획
 - 2.7. 연간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 - 2.8. 1 건당 500 만원 초과, 1 천만원이하의 기부, 찬조, 증여
 - 2.9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이사회 규정	제개정일	2026.04.28
	규정코드	TCK-A-02	Rev No.	4

제 12 조(감사의 출석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3 조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(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지원)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감사인,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1.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2.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6 조(의사록)

1.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3. 의사록은 최소 10 년간의 보관기간을 두는 것으로 한다.

제 17 조(간사)

1. 이사회에 사무국을 둔다.
2. 사무국은 경영전략팀으로 지정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(제정)

이 규정은 2017 년 7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

(개정)

이 개정규정은 2018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

(주)티씨케이	규 정 명	이사회 규정	제개정일	2026.04.28
	규정코드	TCK-A-02	Rev No.	4

(개정)
이 개정규정은 2020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(개정)
이 개정규정은 2024 년 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(개정)
이 개정규정은 2026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